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· 행복한케어 방문요양센터

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 준비 · 방문조사 보호자 동석 사전준비표

대전 유성구 봉명서로 21-17 2층
무료상담 0507-1349-4004 | 공단 1577-1000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(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)와 함께 병원에 지참하는 실전 체크표입니다.

1. 등급 신청부터 의사소견서 제출까지 핵심 진행 순서

진행 단계	담당 주체	보호자 준비물 및 주의 사항
① 인정 신청	어르신 또는 대리인	장기요양인정 신청서(별지 제1호의2) + 대리신청 시 대리인지정서(별지 제9호) + 신분증 (공단 1577-1000)
② 의사소견서 발급	지정 의료기관 주치의	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(별지 제3호) 지참 방문 (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은 신청 단계 제출 권장)
③ 가정 방문조사	공단 인정조사원	보호자 1인 이상 필수 동석, 52개 항목 실생활 불편 사례 메모 전달 (어르신 면전 반박 자제)
④ 등급 판정 통보	등급판정위원회	신청 후 약 3~4주 내 장기요양인정서·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→ 기관 계약 연결

2. 주치의 소견서 면담 전 메모할 내용

확인 영역	병원에 말씀드릴 구체적 증상 (체크 및 메모)	관련 서류 준비
진단·노인성 질병	치매·알츠하이머·뇌경색·뇌출혈·파킨슨병·척추질환·고관절 골절 등	[ ] 처방전·약봉투 [ ] 최근 퇴원요약지
보행·기동력 저하	실내 보행기/지팡이 의존 여부, 화장실 이동 낙상 위험, 편마비 범위	[ ] 영상·진료의뢰서
인지·배회·수면	반복 질문, 야간 배회, 가스불/전기 기구 실수, 폭언·의심 증상 빈도	[ ] 보호자 일지 메모

※ 법정 표준 서식 출처: 보건복지부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서식 (저작권법 제7조 법령·규칙 공공물 / 제출·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)